

2000년도 主要業務計劃報告

2000. 3.

賦課課

1. 일반 현황

1. 직원 현황

과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비고
부과과	정 원	41	1	5	9	12	13	1	
	현 원	40	1	5	15	12	6	1	파견1
	과부족	-1			+6	0	-7	0	

2. 사무분장

구 분	분 장 사 무
부과1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지세, 재산세총괄 ○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영등포동외10) ○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와 취소변경 및 감액(감면) ○ 과세대장정비 및 관리 ○ 토지가격의 설정 및 수정
부과2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총괄 ○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여의도동외10) ○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와 취소변경 및 감액(감면) ○ 과세대장정비 및 관리 및 세표작성 ○ 토지가격의 설정 및 수정
부과3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경주마권세, 사업소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와 취소, 변경 및 감액(감면) ○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대장정리 ○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자료관리

구 분	분 장 사 무
부과4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의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처리 ○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 취소, 변경 및 감액(감면) ○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자료관리
법인관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 법인조사 (서면, 실사) ○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책정 및 시가조사 ○ 담당지역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및 세원관리등

3. 세 원 현 황

가. 토 지 - 94,051 필지 8,853천㎡

나. 건축물 - 8만5천동 16,435천㎡

주 택	아 파 트	기 타
2만9천동/3,378천㎡	3만9천동/4,315천㎡	1만7천동/8,742천㎡

다. 법 인 : 4,705 업체

영 리 법 인	비 영 리 법 인
4,529 업체	176 업체

라. 면허(인·허가)수 : 137,937건

1 종 (주류제조업등96종)	2 종 (과자류제조업등94종)	3 종 (선박대여업등98종)	4 종 (항만용역업등97종)	5 종 (해양시설설치등88종)
3,060건	35,516건	31,708건	44,998건	22,655건

마. 사업장 : 2,422 개소

중업원할 (50인 이상)	재산할 (330㎡ 이상)
768 개소	1,654 개소

바. 자동차 : 107,819 대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기 타
77,035 대	8,406 대	20,272 대	2,106 대

사. 주민세원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법 인	소득세 할	특별징수
138,515 세대	14,766 업체	4,820 업체	19,800 명	102,000 건

II. 2000 주요 업무 계획

1. 2000 세입 예상 목표

(단위 : 백만원)

세목별	구분	2000 목표	'99목표	증 감	
				금액	비율(%)
총 계		362,070	367,074	△5,004	△1.4%
구 세	소 계	53,291	50,249	3,042	6.1%
	재산세	10,327	9,323	1,004	10.8%
	종합토지세	25,029	24,790	239	1.0%
	면허세	3,442	3,486	△44	△1.3%
	사업소세	14,493	12,650	1,843	14.6%
시 세	소 계	308,779	316,825	△8,046	△2.5%
	부동산취득세	33,911	31,481	2,430	7.7%
	부동산등록세	73,001	89,029	△16,028	△18.0%
	도시 계획세	15,283	18,081	△2,798	△15.5%
	공동 시설세	7,522	7,306	216	3.0%
	지역 개발세	25	17	8	47.1%
	차량 취득세	5,626	5,644	△18	△0.3%
	차량 등록세	10,932	10,597	335	3.2%
	주민세	128,744	120,418	8,326	6.9%
	자동차세	19,943	21,214	△1,271	△6.0%
	경주 마권세	13,792	13,038	754	5.8%

* 2000세입목표중 시세 부분은 추정액임.

2. 2000 세입목표 달성계획 및 대책

구 세 — 53,291백만원(전년대비 3,042백만원 증가)

가. 재산세

□ 정 수 목 표 : 10,327백만원 (전년대비 1,004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10,327	9,323	10,261	9,029	9,392	
징 수	10,327	10,867	10,365	9,176	9,044	
목표대비 증가율	10.8%	△9.1%	13.6%	△3.9%	1.3%	

□ 증 가 사 유

-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로 과세면적 신장을 향상
- 경기호전에 따른 징수율 향상

□ 예 상 문 제 점

- 고액 납세자(세액 1천만원 이상)의 분납·물납 요구에 따른 민원 증가
- 빌딩자동화시설 재산세 중과처분에 대하여 진행중인 소송의 패소시기 납부세액의 환부로 인한 세수 감소 예상

□ 과 정 대 책

- 과세내역서와 과세대장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착오자료 정리
- 장기 미준공 및 무허가 건물 철거한 조사로 과세 누락 방지
-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의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중과세 누락 방지
-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기내 납부 안내
- 등기우편송달로 인한 등기반송시 주소지를 확인,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여 납기내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체납을 사전 예방

나. 종합 토 지 세

□ 정 수 목 표 : 25,029백만원 (전년대비 239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25,029	24,790	24,674	27,611	33,596	
정 수	25,029	25,691	24,830	25,565	27,564	
목표대비 증가율	1.0%	0.5%	△2.9%	△17.8%	14.3%	

□ 증 가 사 유

- 신축중인 아파트의 사용승인으로 분리과세가 종합합산으로 과세 됨에 따라 세액 증대
- 과표평준화 및 현실화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인상 예상

□ 예 상 문 제 점

- 세액 1천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의 분납·물납 요구에 따른 민원 증가
- 동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고지서의 직접송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등기우송시 반송으로 인한 송달율 저조

□ 과 정 대 책

- 과세대상 토지의 현황조사를 강화하여 공부상의 지목이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세율적용 착오에 따른 세수감소 방지(종합 합산대상이 별도합산과세 되는 경우등)
-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 마스터자료 전산대사
- 소유권이전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 비과세·감면 대상 토지의 검색 및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여부 확인
- 동기능전환으로 고지서송달을 등기우편 발송시 등기 반송된 고지서를 신속하게 일반우편으로 중복 재발송함으로써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 예방 및 납기내 징수율 향상

다. 면허세

□ 정수 목표 : 3,442백만원 (전년대비 44백만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년예산	'99년	'98년	'97년	'96년	비고
목표	3,442	3,486	3,931	4,928	4,126	
징수	3,442	3,519	4,101	3,382	4,731	
목표대비 증가율	△1.3%	△11.3%	△20.2%	19.4%	19.2%	

□ 예상문제점

- 면허세는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세목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 등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납기내 징수가 어려워 징수율 저조
- 사실상의 폐업이나 세무서에 폐업신고후 허가부서에 폐업에 따른 미신고로 매년 면허세가 과세시 납세자의 납세저항이 크고 세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
- 규제완화 정책으로 면허세 과세대상이 줄어 세수 감소가 예상

□ 과징대책

- 착오과세에 따른 납세민원을 예방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허가부여기관의 과세자료와 전수 대사 실시
- 세원발굴 및 과세누락분에 대한 조사로 세입목표 달성
- 관외분 고지서에 대해서는 송달율이 떨어지는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이 아닌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 시행
- 주소지 변경에 따른 반송고지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주소 추적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도모.
- 신규 및 변경 면허증 발급시 폐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실제 영업업소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라. 사업소세

□ 정 수 목 표 : 14,493백만원 (전년대비 1,843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14,493	12,650	13,613	14,104	11,740	
정 수	14,493	14,677	13,579	14,748	13,862	
목표대비 증가율	14.6%	△7.1%	△3.5%	20.1%	15.7%	

□ 증 가 사 유

- 사업소세는 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 기업의 공장가동율 증가에 따른 실업률 해소
- 기업의 경기호전으로 종업원 채용 증가로 인한 세수증대
- 경기활성화에 따른 임대증가로 대형건축물에 대한 공실을 점차 해소

□ 과 정 대 책

- 각종 인허가 부서와 연계해 사업소현황을 파악하여 누락자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 서면 및 현장조사로 추정
-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대상 사업장중 특별징수 자료 및 연금관리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적정납부여부 및 누락여부 조사 후 탈루세원발굴
- 대규모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주에게 안내문 및 납부서를 우편발송하여 신고납부 홍보 강화
- 사업소세(재산할) 납기 임박시 상담창구를 설치 행정서비스 강화

시 세 — 308,779백만원(전년대비 8,046백만원 감소)

가. 부동산 취득세

□ 정 수 목 표 : 33,911백만원 (전년대비 2,430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33,911	31,481	35,332	45,073	37,961	
징 수	33,911	37,394	30,782	39,318	28,591	
목표대비 증가율	7.7%	△10.9%	△21.6%	18.7%	△4.3%	

□ 증 가 사 유

-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금감했던 부동산 거래가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거래가 점차 증가
- 재건축조합 및 신축아파트의 보존 및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신고납부로 세입 증대

□ 과 징 대 책

-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실상 사용하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세원 조사로 조기 취득세 과세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된 공공법인에 대한 취득물건을 일제히 조사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징
- 시세감면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 감면(25%~100%)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공동주택을 최초분양 취득한자에 대하여 재산조회후 1가구 2주택 확인시 당초 감면 세액 추징
- 본점사업용 부동산 등 중과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세수 증대 도모

나. 부동산 등록세

□ 정 수 목 표 : 73,001백만원 (전년대비 16,028백만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73,001	89,029	48,012	49,741	44,201	
정 수	73,001	99,498	53,652	54,746	40,970	
목표대비 증가율	△18.0%	85.4%	△3.5%	12.5%	31.1%	

□ 예상문제점

- 토지과표 현실화가 '99년 70%에서 2000년 80%로 과표 상승이 되었으나
- 지방세법 개정 및 조례개정 등으로 중과세율 완화와 서울시 감면조례의 감면조항이 일부 개정되면서 자연 세수 감소

□ 과징대책

-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의해 용도구분 비과세 및 감면된 공공법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비과세 및 감면받은 자가 취득 목적에 따라 사용여부를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후 타 목적 사용시 당초 비과세·감면 세액 추정
- 신설 법인 및 지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대상 여부를 면밀히 조사 세원발굴 지속 추진
- 공동주택(아파트등) 최초분양자의 감면대상자 재산조회후 1가구 2주택 확인시 세액 추정
-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하여 탈루 세원 적극 발굴

다. 차량 취득세

□ 정 수 목 표 : 5,626백만원 (전년대비 18백만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5,626	5,644	4,718	9,318	10,570	
정 수	5,626	6,157	4,457	8,930	8,878	
목표대비 증가율	△0.3%	19.6%	△49.4%	△11.8%	20.8%	

□ 예 상 문 제 점

- 전반적인 경기회복 및 자동차를 이용한 생업종사자의 증가로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증가
-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경승용차 및 소형차에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대체취득

□ 과 징 대 책

- 미등록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이행 및 자진납부 홍보 실시
- 자납불이행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주민등록주소 조회후 고지서 송달 및 납부독려
- 건설기계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변경시 사실상 명의변경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사실상 소유권 변동조사, 취득가격의 정상 신고이행 및 구조변경시 성실신고 납부 유무를 조사하여 과징대상이 될 경우 과감한 부과 조치

라. 차량 등록세

□ 정 수 목 표 : 10,932백만원 (전년대비 335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10,932	10,597	7,235	14,890	12,650	
정 수	10,932	11,706	7,346	13,642	14,022	
목표대비 증가율	3.2%	46.5%	△51.4%	17.7%	△0.7%	

□ 증 가 사 유

- 전반적인 경기회복 및 자동차를 이용한 생업종사자의 증가로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증가
- 관내 중고차 매매상사 및 자동차영업소에서 타구분 자동차의 이전등록 및 신규등록 증가
-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경승용차 및 소형차에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대체취득

□ 과 정 대 책

-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토록 자동차 등록부서에 협조 의뢰
-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관내 중고차 매매상사 및 자동차영업소에서 우리구에 이전등록 및 신규등록 토록 유도
- 등록세 자진납부시 탁송료 등 부대비용 과표 포함 여부 면밀히 조사
- 외국산 자동차의 취득가액 적정 산정 및 리스차량의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자 및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 탈루 방지

마. 주민세

□ 정 수 목 표 : 128,744백만원 (전년대비 8,326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128,744	120,418	104,000	112,271	88,111	
정 수	128,744	128,457	109,527	99,185	81,898	
목표대비 증가율	6.9%	15.8%	△7.4%	27.4%	36.2%	

□ 증 가 사 유

- 경기호전으로 인한 법인들의 영업실적 증가와 개인의 소득증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수 증가 예상
-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매매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
- 매출액 신장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로 균등할 주민세 증가

□ 과 정 대 책

-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소득세할주민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우편발송
- 신고납부 상담창구 운영 및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납세안내 홍보 강화
- 세무서 과세자료 활용으로 개인사업자(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에게 과세하는 주민세의 세원관리 강화
- 정기분 과세 누락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과세자료를 정밀 대사하여 신속한 부과로 조기 징수 확행
- 타지역에서 전입한 법인의 주민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시 세액추징

바. 자동차세

□ 정 수 목 표 : 19,943백만원 (전년대비 1,271백만원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19,943	21,214	22,820	24,399	25,624	
정 수	19,943	19,780	22,968	22,972	21,216	
목표대비 증가율	△6.0%	△7.0%	△6.5%	△4.8%	14.5%	

□ 예상문제점

- 전반적인 경기호전과 임금상승으로 차량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의 세율이 대폭 하락함으로써 세수 감소
- 서울시 감면조례 제25조에 의거 감면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규장애판정자의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

□ 과징대책

- 자동차세의 연납 및 분납의 납부안내유도로 징수율 제고
-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등기 반송고지서의 일반 우편 재발송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자동차세 납부 안내 홍보 (동사무소·민원실 및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등)
- 실사용자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미정리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미소유사실 확인 증빙으로 말소 정리 안내

사. 경 주 마 권 세

□ 정 수 목 표 : 13,792백만원 (전년대비 754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년예상	'99년	'98년	'97년	'96년	비 고
목 표	13,792	13,038	14,177	10,675	1,432	
정 수	13,792	13,170	12,067	12,650	5,658	
목표대비 증가율	5.8%	△8.0%	32.8%	745.5%		

□ 과 정 대 책

- 경주·경마 종료후 10일 이내 신고납부 강화
- 신고불이행시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부과
 - 장부비치 : 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세액, 투표방법의 종류와 적중수
 - 납세를 위한 시정 명령 조치

3. 법인 세원 발굴 계획

- 법인현황 : 총 4,705개 (영리 : 4,529개 , 비영리 176개)
- 세원발굴목표 : 6,587백만원 (전년대비 905백만원 증가)
- 자치구세 위주의 세무조사
 - 재산세
 - 건축물의 개별현황조사
 - 과세대장 및 공부대조로 누락분 조사
 -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적정여부
 - 종합토지세
 - 과세종별(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대한 개별적 검토
 -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전산조사
 - 200㎡이상 및 비과세 감면토지 현장확인
 -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적정과세여부 검토
- 다양한 세원 발굴
 - 사치성재산(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물건조사
 - 법인의 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종과 여부 검토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용 부동산 조사
 - 법인시공 건물 도급가액 조사 및 미준공건물 일제조사
 - 법인취득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단서규정 이행여부 및 타용도 사용여부 조사
 - 서면 미신고법인 및 실사 대상 법인 특별관리

Ⅲ . 비예산 특수사업

1. 폐업시 면허 신고에 대한 안내문 발송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면허등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실상 폐업을 하였으나, 세무서만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부여기관에는 폐업 신고를 하지않아 수년간 면허세가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폐업시 면허 신고에 대한 안내로 적절한 폐업절차를 유도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함

□ 현 황

-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시 신고 납부
- 면허세의 성격상 사실상의 폐업이나 세무서의 폐업만으로는 면허세 부과 취소를 할수 없음

□ 문 제 점

- 면허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세무서에 폐업신고후 면허부여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않아 수년간 면허세가 과세되어 납세저항이 거세고 체납이 증가

□ 개 선 방 법

- 내부기관(구청)내의 면허에 대하여는 민원봉사과에서 면허증서를 교부할 때 안내문을 함께 교부
- 타 기관에서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시분고지서 발송시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
- 일반면허는 정기분에 대한 독촉장 발송시 안내문을 함께 송달

□ 기 대 효 과

- 적절한 폐업절차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민원발생 감소
- 실제 영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2. 등기반송고지서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각종 고지서의 직접송달이 어려워 집에따라 고지서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정확한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등기반송분고지서에 대하여 주민전산망을 통해 정확한 물건지와 주소지를 확인하여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 현 황

- 각종고지서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송달.

□ 문 제 점

- 등기송달시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 송달율이 저조하며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민원발생
- 일반 우편물의 경우는 송달율은 좋으나 송달근거가 남지 않아 지방세법에 위배되고 송달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개 선 방 법

-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먼저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송한후 반송되는경우 주민전산망에 의한 주소 및 물건지를 재확인후 재발급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송달

□ 대 상 고 지 서

-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정기분 및 수시분 전세목

□ 기 대 효 과

- 등기반송분을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미송달로 인한 민원 사전 예방 및 최소화
- 송달율을 높임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향상

3.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방법 개선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신고납부 하여야하나, 신고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 및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우편발송 함으로써 가산세 부과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 현 황

- 납부대상자에게 신고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신고납부 유도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문 제 점

-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할 민원인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신고납부기간 경과로 20%가산세 부담

□ 신고납부방법 개선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2항)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관할세무서에 직원을 상주시켜 자진신고납부 안내 실시
- 우리구 관내 세무사에게 납부안내문 발송
-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를 발췌하여 주민세 납부기간 마감일 이전에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고지서를 동봉하여 우편발송

□ 기 대 효 과

- 자진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징수율 증가
- 민원인이 가산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으로 신뢰세정 구현